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56
----------	-----

제출년월일 : 2000. . .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제안이유

- 정부 10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통해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강화 및 자율권 신장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원활히 추진키 위해 한시정원 1명 승인과
- 화재 등 각종 재난사고 증가에 따라 구조·구급 업무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능동적 대처하기 위한 119구급대 운영 필수인력이 정원 승인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정원의 총수 : 2,283명 ⇒ 2,315명(32명 증원)

- 집행기관의 정원 : 1,370명 ⇒ 1,372명(2명 증원)

- 소방공무원의 정원 : 820명 ⇒ 850명(30명 증원)

-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1명(변동없음)

-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2명(변동없음)

□ 근거법령 : 따로 붙임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2,283명”을 “2,315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중 “1,370명”을 “1,372명”으로 하며, 동조 제2호중 “820명”을 “850명”으로 한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제2614호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 중개정조례 부칙 제2조 표2의 정원의 총수의 정원란중 “2,362”을 “2,394”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의 정원란중 “1,446”을 “1,448”으로 하며, 소방본부·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의 정원란중 “820”을 “8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이 조례에 의하여 지방이양 업무추진 전담인력을 위한 정원 1명은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0조 (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 체계를 이를 수 있도록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 제21조 (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
2. 본청·소방학교 및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총수의 범위 안에서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원관리기관별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